

의안번호	2205749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11.22.
추계번호	24E52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2조제7항 신설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제7항 (특별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이들의 소득 규모 및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상세정보 필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¹⁾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로는 보육료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첫만남 이용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이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 사회서비스를 특정할 수 없고,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 등에 대한 자료도 부재하여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